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개정 2025. 6. 2.>

관리운영직군에서 행정직·과학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

(제5조제3항 관련)

계급 직렬 직류		6·7급		8·9급	
행정	일반행정	행정학	행정법	사회	행정학개론
세무	세무	행정법	세법	사회	세법개론
전산	전산개발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컴퓨터일반	소프트웨어공학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학	행정법	사회	교육학개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행정법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사서	사서	행정법	자료조직론	사회	자료조직개론
공업	일반기계	물리학개론	기계공학법	물리	기계일반
	전기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물리	전기이론
	화공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화학	유기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재배학	식용작물학	생물	식용작물
임업	전 직류	생물학개론	조림학	생물	조림
해양수산	선박항해	선박개론	항해학	물리	항해
	선박기관	선박개론	선박기관학	물리	선박기관
보건	보건	보건학	보건행정학	생물	공중보건
시설	일반토목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물리	응용역학개론
	건축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물리	건축계획
방송통신	전송기술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물리	무선공학개론

비고: 위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직렬의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결정한다.